

特許登録出願・明細書作成要領

建築部門



金 明 信

〈辨 理 士〉

① 序 言

特許法施行令 第1條 第2項은 特許出願書에는 반드시 發明의 名稱·발명에 관한 圖面의 簡單한 說明·발명의 詳細한 설명과 特許請求의 範圍가 記載된 明細書 및 도면을 添付하여야 한다고 规定하고 있다.

이러한 명세서는 발명한 技術內容을 文書化한 技術文獻인 同時に 特許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無體財產權으로서 權利範圍判斷의 基礎가 되며 설령 拒絕査定되었다 하더라도 後出願에 대한 先願權을 主張하는 證據書類가 되므로 簡潔하면서도 明瞭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明細書는 內外國人의 출원을 莫論하고 반드시 우리말로 作成하여야 하므로 특히 외국인의 명세서는 正確한 用語로 翻譯하여야 한다.

明細書作成時 누구나 留意할 點은 명세서는 學位論文처럼 특정한 사람이나 特殊技術者만이 알 수 있는 程度로 기재하여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그 발명이 屬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根本的인 問題로서는 명세서의 기재내용이 특허되기 전에 일단 一般에게 公開되는 것이므로 그 發明全體를 이론바 Know-how (技術秘密)로 維持할 수 있다면 굳이 特許出願을 할 必要가 없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技術內容全部를 공개하지 않고 一部는 Know-how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을 명세서에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때 Know-how로 가지게 되는

對象은 이것을 명세서에서 빠트려도 所期의 作用效果가 나오는 경우에만 可能한 것이지 이 부분이 發明自體에서 찾아하는 比重이 너무 큰 나머지 密接不可分이면서도 有機的으로 結合되어 있어서 到底히 이 부분을 言及하지 않고는 그 발명이 無色해지는 경우에는 不得已 包含시켜야 할 것이다.

〈例 示〉

特許出願서 (特許出願用紙)				
발명자 (고안자)	성명	김 달동	주민등록 번호	128956~ 2189234
	주소	경북 대구시 중구 남산동 809		
	국적	한국		
출원인	성명	한라산	주민등록 번호	381256~ 0008795
	주소	제주도 제주시 한라동 100		
	국적	한국		
대리인	성명	정선달	주민등록 번호	239856~ 0012389
	주소	서울특별시 종구 남대문로 4가 29		
	별명(고안)의 칭	한라산 돌풍의 처리방법		
외국인	최초 출원	국명	일자	번호
	자국 출원	국명	일자	번호
출원	우선권 주장여부			

특허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원합니다.

1976. 10. 18

출원인(대리인) 정선달 ①
특허청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출원서 부본 1통
- ② 명세서(정·부본) 각 1통
- ③ 도면(정·부본) 각 1통
- ④ 외국인 위임양도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각 1통

② 特許明細書의 作成要領

上記한 바와 같이 명세서에는 ① 발명의 명칭 ② 도면의 간단한 설명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④ 특허청구의 범위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具體的인 作成要領은 다음과 같다.

① 發明의 名稱

발명의 명칭은 발명의 標題이며 발명내용을 簡潔한 單語로서 가장 效果的으로 摘示한 발명의 要旨이므로 現行 發明·實用新案分類表를 參考로 어떤 部門의 발명인가를 檢討한 후에 그 발명의 持徵을 가장 잘 나타내는 文句를 使用하여야 한다.

② 圖面의 簡單한 說明

명세서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며 만약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不必要하다.

따라서 명세서의 核心을 效率的으로 把握할수 있도록 어떤 도면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第1圖는 正面圖, 제2도는 斷面圖, 제3도는 斜視圖 등으로 기재한다.

③ 發明의 詳細한 說明

발명의 상세한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目的·構成·作用 및 效果를 설명한 것이어야 한다(特許法施行令 第1條 第4項).

(가) 發明의 目的

발명의 목적이란 발명이 解決하고자 하는 技術的 目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從來의 技術內容이나 技術水準 또는 그 短點·弊端·缺陷등을 구체적으로 明示하고 이 발명이 종래의 기술중 어떤 부분을 改善·改善·補完·創作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그 利用分野나 技術的 解決範圍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概要를 記述하여야 한다.

이 때 先行技術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特許公報등 文獻을 調査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發明의 構成

발명의 구성은 상기한 발명의 목적을 達成하기 위하여 어떠한 方法이나 어떠한 구조로서 構成한 것인지를 그야말로 상세히 설명하되 이미 公知된 技術部分과 獨創的인 부분을 區別하여야 할 것이고 도면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면의 필요한 부분에 番號로서 圖示한후 명세서에는 技術用語에 번호를 併記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

(다) 發明의 作用

발명의 作用欄이란 어떠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발명이 발명의 목적을 向하여 어떻게 作動하고 作用하느냐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說明欄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實施例가 있으면 그 條件·反應·動作 등을 기술하면 더욱 좋다.

(라) 發明의 效果

아무리 발명의 목적이 그럴듯하고 技術的 構成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가진 효과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면 특허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선행기술에 비하여 어느 정도 進步하였고 優秀한 것이며,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④ 特許請求의 範圍

特許發明의 技術的 範圍는 特許出願書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정한다는 규정(特許法 第57條)이 있을뿐만 아니라 特許權의 權利範圍를 判斷하는 基準이 되므로 이 점을 銘心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법은 1發明에 대하여 1出願으로 한다는 1發明 1出願의 原則(特許法 第9條)이 있고 특허청구의 범위는 그 발명의 구성을 필요한 사항만을 하나의 項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特許法施行令 第1條 第5項) 留意하여야 한다.

그러나 技術的 效果發生에 有機的으로 結合된 것이 아닌 公知事項은 설령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獨占排他的인 권리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大法院 1973. 10. 10宣告, 73후 45判決) 이러한 공지 또는 公用事項은 오히려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